
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정부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의2 신설).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7조의2 제3항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안 제11조의2제1항의 법문 중 “이공계 특성화 대학”을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“이공계 대학”으로 정비¹⁾하고,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을 고려하여 안 제17

1)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연구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.

라.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

제4조(기본계획의 수립)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6.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산·학·연의 연계체제 강화

제8조(이공계 대학 진학 촉진 및 학습동기 고취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·중등 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(“재학생등”이라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조의2제4항의 위임입법 규정을 정비²⁾하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Ⅲ. 관계 기관 의견

- 교육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중심대학(현행 제11조)을 지원하는 경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것을 규정³⁾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안 제11조의2에 따라 정부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을 지정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입장임.⁴⁾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2) 안 제17조의2제3항은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과 정보 수집 등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,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. 다만, 안 제17조의2제4항은 “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”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경비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3)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11조(연구중심대학의 육성·지원) ①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(이하 “연구중심대학”이라 한다)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(연구중심대학의 지원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대학(이하 이 조에서 “연구중심대학”이라 한다)을 지원할 때에는 선정기준, 지원대상 분야 및 지원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**교육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.** 다만, 지원하려는 연구중심대학이 「한국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또는 「광주과학기술원법」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인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4) 교육부는 「정부조직법」 제32조에 따라 인적자원개발정책, 학교교육,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, 특히 교육부장관은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 정원, 교원 제도, 입학 및 졸업 등에 관한 학사 운영 등의 사무의 소관 주체이므로,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지정 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.